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ASEAN + 1FTA 이상의 부가가치

□ ASEAN¹⁾의 구심력 유지를 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지금까지 14개국의 산업계는 동아시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²⁾을 잘 이해하지 않고 있음. 지금까지 ASEAN + 1FTA에서 실현되지 않았던 과제를 얼마나 RCEP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 동아시아의 생산·조달 네트워크 최적화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가 과제임.
- ASEAN 및 관계 각국 정부는 2012년 중 RCEP 교섭을 시작하기 위하여 참가 기준을 작성 하길 서두르고 있음. 한편, RCEP의 경제적 합리성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국내 산업을 개 입시키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국 산업계에 RCEP의 개념 자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평가할 수 없는 모습이 부각되었음.
- RCEP이 2011년 아시아 태평양의 외부환경이 변하면서 「ASEAN의 구심력」을 유지하기 위 하여 설립하려는 견해가 있음.
 - 중국의 한 연구자는 RCEP은 ASEAN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구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³⁾교섭이나 한-중 FTA와 한-중 -일 FTA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동아시아의 경제제휴로 ASEAN이 중심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역의 경제 제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함.
 - 인도네시아 상업성 통상협력과장은 RCEP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TPP에 대항하는 국제 협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ASEAN 역내 평가

- ASEAN 내에서도 「FTA 추진국」 위치가 부여되어 실제로 TPP 교섭에 참가하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RCEP에 대하여 적극적인임. ASEAN 10개국은 RCEP교섭에 참가할 국가 들과 이미 FTA를 발효하고 있음. 싱가포르는 RCEP에 의한 수출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 라고 예상함.
 - 말레이시아는 RCEP은 위협이 아닌 오히려 제품에 경쟁력을 준다고 평가하고 있음. 싱가포르는 5개의 ASEAN+1FTA가 RCEP으로서 통합되면, 각각 다른 원산지규칙의 조정과 더불어 누적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누적 규정’을 통한 일부제품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 다는 장점을 강조함.
 - 지금까지 ASEAN은 5개의 ASEAN+1FTA에 의한 「동아시아 경제권」을 형성해 왔지만, 실제 로는 각각 ‘분단’되고 있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올렸음.

1) ASEAN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약칭이다. 1967년 8월 8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5개국이 창립국으로 창설되었다. 현재는 10개국으로 늘었다.

2) RCEP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6개국이 참여하는 경제 동맹이다. 2012년 11월 15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동티모르가 창립국으로 창설되었다.

3) TPP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2개국이 참여하는 경제 동맹이다. 2011년 2월 4일 미국,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캐나다, 멕시코가 창립국으로 창설되었다.

- 지금까지 체결해 온 FTA에서는 관세 삭감 및 철폐가 되지 않은 품목도 있어, RCEP 교섭으로 ASEAN+1FTA나 2개 국가 간 FTA를 상회하는 관세 양허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음.
- 베트남은 RCEP에 거대한 무역적자를 안고 있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교섭이 아니라고 경계함. 베트남 정부는 TPP 및 EU와의 FTA교섭을 가장 중시하고 있음.
 - FTA로 미국, EU 등 선진국시장이 개방되어도 단숨에 제품이 베트남에 유입된다고 생각하는 어렵고, 베트남에 있어서는 편리한 FTA라고 판단하고 있음.
 - 베트남 섬유 업계는 옷감을 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RCEP으로 중국산 옷감을 사용하면, 일본이나 한국 등 RCEP 가맹 선진국에 적합한 수출 환경이 조성된다는 기대를 하고 있음. 섬유산업이 중국제 옷감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도 같은 입장임.
 - RCEP실현으로 시장 확대에 기대가 큼. ASEAN 내에서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제일의 산업집적을 자랑하는 태국은 RCEP을 환영하고 있음. 특히 자동차산업에서는 일본에서의 신기술이나 신모델의 투입 타이밍과 ASEAN 및 주변국에서의 투입 타이밍 조절여부에 따라 판매 수량이 좌우됨.
 - 신기술이나 신모델에 필수적인 부품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 지금까지 태국에서 인도에 수출할 경우, ASEAN-인도 FTA(AIFTA)의 원산지 규정을 만족시킬 수 없어 특혜관세를 누릴 수 없는 것이 많았음.
 - 이런 품목에 대해서도 RCEP이라면 특혜관세를 누릴 수 있다고 강하게 기대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RCEP은 인도의 참가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많음. 어떤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은 중국과 인도를 같은 FTA의 틀에 넣는 것으로 원재료나 부품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생산 가격 삭감으로 연결된다고 환영함.

□ 인도의 입장이 중요

- 역외 6개국 (일본,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과 이미 ASEAN+1FTA로 연결되어 있어 RCEP은 ASEAN에 있어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극적인 무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님.
 - 역외 6개국은 ASEAN을 통해 연결되어 있지만, 상호의 FTA에 의한 것이 아님. 실제로 FTA가 발효되어 있는 것은 인도와 한국 및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 등 지극히 일부임.
- 이들 6개국이 연결되면, 'RCEP의 경제효과는 5개의 ASEAN+G1FTA 이상'이라고 기대되지만, RCEP 교섭 시작이 다가오는 가운데 6개국의 산업계에서는 RCEP에 대하여 기대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아시아 각국에서는 농산품이나 식품·음료 등에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유업기업, 과일수출기업, 음료업체는 FTA 미체결 및 미발효인 일본, 한국, 인도 등으로의 수출로 관세가 삭감되면 크게 유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RCEP 교섭의 행방을 크게 좌우할 것은 인도임. 인도 정부는 RCEP에의 참가에 대하여 다양

한 조건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정부로서는 RCEP 참가에 의욕적으로 대처 하겠다고 함.

- 산업계는 RCEP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게 경계하고 있음. 인도 수출조합연합회 총재는 중국의 덤핑 문제를 지적하며 인도가 안이하게 RCEP에 참가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있음
- 인도 산업계에 중국과의 FTA 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없으며,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남서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중국은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덤핑을 되풀이하여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불신감이 있다고 언급하며 인도의 RCEP 교섭 참가 자체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함.

○ RCEP에 의한 다국 간 교섭에서는 높은 수준의 FTA 실현에 회의적인 견해도 있음. 중국의 전문가는 5개의 ASEAN+1FTA의 수준에는 편차가 있어, RCEP이 이들 5개 FTA의 어느 것보다도 수준이 높아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함.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https://www.jetro.go.jp> 2012.09)

✉



우크라이나, 밀 수출 중단 계획

□ 식량안보 위협으로 다음 달 중순부터 밀 수출 중단

- 우크라이나는 11월 중순부터 밀 수출을 중단하는 것을 계획함. 올 여름 식량 상품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래로 무역 제한을 위한 주요 밀 생산국의 첫 번째 움직임임.
 - 이러한 움직임은 2007-08년 식량위기를 악화시킨 수출금지 조치에 관한 우려를 다시 제기할 것임.
 - 2010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랍의 봄⁴⁾(Arab Spring)’을 촉발하는 원인이 된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정부는 무역업자들에게 수출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알렸으며 이를 수출업자들의 상호협약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수출금지 통보임.
-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조지 주코스키(Jorge Zukoski)는 11월 15일부터 밀 수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힘. 키예프의 농업 장관은 수출을 금지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결정은 없으나, 만약 수출이 증가하여 국가 식량안보를 위협한다면, 대책을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함.
- 우크라이나는 세계 10위의 밀 수출국이며,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더불어 세계 밀 수출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음.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의 중요한 밀 공급 국가들은 올해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음. 무역업자들은 현재 모스크바에서 유사한 움직임이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10월 28일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결정은 총선 직전에 있음. 가난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주식인 밀과 빵에 대한 가격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임.
- FAO 압둘레자 아바시안(Abdolreza Abbassian) 선임 경제학자는 어려운 국내 상황 때

문에 국가들이 수출 제한을 고려할 경우, 내년 세계 시장 및 개인 소유의 곡물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함.

- 수출 금지를 적용하는 것이 새로운 판매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기존 판매를 포함시킬지는 명확하지 않음.
 - 곡물 무역업자에 따르면, 11월 초 회의에서 정부는 수출 제한 금지에 대한 규칙을 명확할 것임.
- 정부는 과거에 행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수출을 금지하여 시장 간섭의 비난을 받길 원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정부는 여러 제안을 통해 무역업자의 상호 협력을 추구하고 있음.

자료: Financial Times(<http://www.ft.com> 2012.10.19)



유럽의회, 일본과의 FTA 촉진 협의

□ 자동차분야의 비관세 장벽 대책 강조

- 유럽의회는 10월 2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일본과의 FTA교섭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음.
 - 동 결의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지만, 유럽의회는 6월, 가맹국으로 구성된 EU각료이사회에 대하여, 유럽의회 의견 기다리지 않고, 일본과의 FTA 교섭 시작을 결정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었음.
- 리스본 조약⁵⁾에 의해, 공동통상정책분야의 입법에도 유럽의회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음. FTA의 이행을 위해서는 세이프가드 규칙 등 동 분야의 입법이 필요함.
 - 유럽의회 동의 없이 FTA를 이행하는 것은 곤란함. FTA의 잠정적용에는 유럽 의회 동의는 법적으로는 불필요하지만,⁶⁾ 최종적인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 의회 동의가 필요하게 됨.
 - 리스본 조약 발효이후, 유럽의회 영향력은 강해지고 있음. 유럽의회 전문 부회인 국제무역 위원회는 이미 10월 11일, 일본과의 FTA 교섭 시작을 촉진하는 결의를 하였음.
- 금번 채택된 결의는 비관세장벽이 현지 기업에 유리한 규제, 관행을 초래하고 있

5) 2002년 11월 1일 발효된 리스본 조약은 EU의 입법 절차를 개정하여, 공동통상정책 분야에 있어 유럽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규정하고 있다.

6) 잠정적용은 FTA의 일부 조항이 발효되기 전이라도 FTA의 효력을 일부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FTA의 완전한 발효를 위한 전 단계로, FTA의 잠정적용은 FTA의 발효를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며, FTA의 발효를 위한 필수 조건은 FTA의 조항이 발효되는 것이다.

7) 유럽 의회는 2007년 10월 25일 본회의에서 일본과의 FTA 교섭을 촉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어 관세이상으로 제거가 곤란하다고 강조함.

- EU산업계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없었지만, 만일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삭감된다면, EU의 대일(對日)수출은 최대 71% 증가할 수 있다고 함.

- 유럽의회는 교섭 권한에 자동차분야의 비관세장벽제거를 위한 「명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목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특히 「zoning 규제」나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한 규제, 일본의 경차(輕車) 우대와 같은 규제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전자기기나 우정(郵政)사업, 철도분야의 조달에서의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도 제거되어야한다고 언급함.

□ 일본의 대응이 불충분하면 교섭 쟁지 불사

- 금번 결의는 대일(對日) FTA교섭 시작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검토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검토 조항의 삽입을 요청함.
 - 일본이 EU의 우선적 요구를 만족하면서 충분한 야심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와의 협의를 거쳐 교섭을 정지해야 한다고 함. 결의는 재검토 조항의 일환으로 영향 평가의 실시 확보를 추구하고 있음.
- 결의에는 어업과 고래잡이(捕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EU-일본 간에 심각한 차이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고래잡이, 고래제품 거래의 폐지 문제를 논의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결의를 정리하여 보고한 유럽자유민주동맹(ALDE) 의원은 일본과의 무역에 관한 결의 투표는 EU를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블록 1개와 자유무역 교섭을 위한 조치로 적당하지 않으므로 유럽위원회가 일본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여야 함을 언급함.
 - 재검토를 상세히 하기 위해서는 교섭으로부터 1년 이내의 구속력 있는 재검토 조항을 삽입하는 수정을 제시하였음. 성공의 열쇠는 특히 자동차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한다는 약속을 일본이 지키도록 하는 것임.
- 교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며 유럽집행위원회는 현재 7월에 제시한 교섭안(案)에 대하여 가맹국과 협의하고 있음. 11월 29일에 개최되는 EU 외무장관 이사회는 동 지령안 승인을 협의할 것임.
 - 한편, 10월 19일에 발표된 유럽이사회의 총괄에서도 대일 FTA에 대하여 언급하

고 있으며, 향후 몇 개월 내에 교섭을 시작 할 수 있도록 교섭 지령안의 합의를 요청하였음.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https://www.jetro.go.jp> 2012.10.26)

일본, 환경보전형 농업직접지원대책 가입 증가로 단가 재검토

□ 일본 농림수산성, 환경보전형 직접지원대책 재검토

- 농림수산성은 지구 온난화방지 등을 위하여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 지원 대책’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단가 설정 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함.
 - 가입 4년째 이후의 농가의 지원 단가를 기본의 80% 정도로 억제하고, 남은 재원(財源)을 신규 가입자에게 배정할 예정임. 상기 대책을 이해하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이 대책은 2014년도에 도입할 예정이며 가입자를 높이기 위하여 2013년에는 ‘퇴비 시용(施用)’을 전국 공통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음.
- 2013년도 예산의 개산요구에서 동 대책은 작년과 같은 24억7,000만 엔을 계상함. 가입 4년째 이후의 농업자에 대한 지원 단가를 2014년도부터 내리는 것은 재원 가운데 환경보전형 농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농업자를 늘리기 위해서임. 가입 3년째까지는 정착 기간으로 보고 전액을 지불함.
 - 동 대책은 2011년도에 시작되었음. 화학 비료·화학농약을 50% 이상 줄이면서, 환경보전의 효과가 높은 영농 활동을 하는 농업자에게 10a당 최대 4,000엔을 지불함.
- 전국 공통 지원 대상에 2013년도에 투입하는 퇴비 시용(施用)은 탄소를 흙 안에 모아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에 효과가 있는 대책의 하나임. 축산 분뇨나 볏짚 등 퇴비를 사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음. 현재는 10개 도현(道縣)이 도입하고 있어 농림수산성은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판단하였음.
 - 비용을 점검한 결과 퇴비 시용(施用)의 지원 단가는 현행보다 300엔 이하로 인하한 2,200엔으로 결정함.
 - 2013년, 현행에서는 전국공통의 지원 대상인 겨울 철 논의 물 관리, 무간(畝間)에 보리류 등을 심는 리빙 멀티(living multi), 초원재배 등을 지역특인(特認)⁸⁾으로 바꾸고 있음. 도도부현(都道府縣)이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모두 4,000엔의 단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고 함.

-
- 녹비(綠肥)⁹⁾ 등을 이용한 피복작물(被覆作物, cover crop)¹⁰⁾의 경작과 유기농업은 전국 공통으로 설정하고 있음. 단가는 4,000엔으로 그대로 두며, 단지 유기농업 중 통상적으로 약간의 비료·농약으로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은 1,500엔으로 인하한다고 함. 메밀이나 잡곡, 사료작물 등을 염두에 두고 있음.
 - 동 대책의 재검토는 정부의 행정쇄신회의로부터 작년 11월 ‘환경보전효과가 높은 영농 활동의 도입을 장려하는 구조가 되고 있는가’라는 지적에 대해 농림수산성이 올해 5월부터 지식인 회의를 마련하여 검토한 것임.

자료 : 日本農業新聞(2012.11.01)

일본, 농림수산업성 보리와 대두 경작확대 대책 검토

□ 보리와 대두, 육종 및 수요증가 등 검토

- 일본 농림수산업성 장관은 19일 내각회의 후 회견에서 전작(轉作)¹⁾ 조성금에 해당하는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수전(水田)활용교부금에 대하여 보리와 대두의 2012년도의 경작 계획 면적이 작년도를 밑돈 것과 관련하여 경작 확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힘.
 - 현행 보조금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용도에 따른 품종개발이나 수요의 발굴, 경작을 촉진시키는 시책 등을 조합하여 추진할 방침임.
- 보리와 대두의 경작 확대 대책은 자민당 정권시대를 포함하여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어 왔지만, 민주당 정권이 내세우는 식량 자급률 목표 50% 달성에는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임.
 - 중장기 목표의 중점과제로서 2013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포함하여 검토할 예정임. 민주당도 호별소득보상제도 검토팀(working team)을 구성하여 2013년도 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음.
- 농림수산업성 장관은 우량 품종의 육성이나 보급, 10a당 수확량을 올리기 위한 기술 개발과 함께 집단윤작시스템(block rotation)²⁾이 있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대책도 마련하였으며 지역전체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동 교부금대상인 보리·대두의 경작이 감소한 요인으로서 토양 등의 관계에서 생산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고 지적함. 동 제도에서 사료용 쌀이나 쌀가루용 쌀, 가공용 쌀 등 주식용 이외의 쌀 경작을 전작작물로 한 것에 대하여 전작이 약간은 쌀에 치우쳤다는 인식도 나타냄.

1) ()
2) () () ()

○ 동 교부금에서는 신규 수요미 (쌀가루용·사료용·발효 조사료용)에 10a당 8만 엔, 보리·대두·사료작물에 3만5,000엔, 메밀·유채의 씨·가공용 쌀에 2만 엔을 교부함. 대상이 되는 경작 계획 면적은 작년의 지불 실적과 비교하여 보리가 3,579ha, 대두가 4,062ha 각각 감소하였음.

- 한편 가공용 쌀은 5,460ha, 신규 수요미는 2,893 ha 각각 증가하였음. 단, 가공용 쌀은 작년에 약 1만 ha 감소하였고 신규 수요미는 작년보다 약 2만8,000ha 증가하였음.

자료 : 日本農業新聞(2012.10.20)

미국, 온라인 소비자 불만 전자신고 양식 발표

□ 식품안전검사국, 온라인 소비자 불만 전자신고 양식 발표

- 미국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은 소비자가 육류, 가금류 및 난제품(卵製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 전자신고 양식(Electronic Consumer Complaint Form)’을 발표함.
 - 온라인 양식¹³⁾을 통해 소비자들은 질병, 알레르기 반응, 부상, 부적절한 라벨 표시 및 수입제품 관련 문제를 소비자 불만 감시 체계(Consumer Complaint Monitoring System, CCMS)에 보고할 수 있음.
- USDA 식품안전 담당국장 엘리자베스 하겐(Elisabeth Hagen)은 소비자는 미국의 육류, 가금류 및 난제품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강조함. 이 새로운 체계는 식품 공급의 감시를 강화하고, 식품 매개 질환(Foodborne illness)을 예방하며, 소비자가 직접 식품안전검사국에 문제를 보고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소비자 불만 감시 체계에 문제가 신고 되면, 소비자 불만 감시 체계는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었거나, 식품안전검사국 검사관이 기존의 동일한 사례를 발견한 경우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게 됨.
 - 사례별로 식품안전검사국은 광범위하거나 심각한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함.
- 식품안전검사국은 미국의 식품공급에서 공중보건위협을 발견하고,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2001년에 설립됨. 신고 된 사례들은 우선 주정부와 지역정부의 보건부, 또는 미국 농무부의 육류 및 가금류 제보 핫라인¹⁴⁾(Meat and Poultry Hotline)을 통해 식품안전검사국 지점으로 보고됨.
- 식품안전검사국에 문제를 신고하길 원하거나, 식품 안보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소비자들은 육류 및 가금류 제보 핫라인에 무료로 통화할 수 있음.

-
- 식품 안보 가상대리인 ‘카렌에게 문의하세요(Ask Karen)’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¹⁵⁾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음.
 - 소비자불만 온라인신고 양식은 식품안전검사국의 2011-2016전략 계획(Fiscal Year 2011-2016 Strategic Plan)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중요한 세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식품 매개 질환 예방,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의 이해 및 변화(Understand and Influence the Farm-to-Table Continuum), 소비자의 권한 확대와 사회기반시설 강화(Empower People and Strengthen Infrastructure) 등임.
 - 식품안전검사국은 온라인신고 양식 외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식품안보실무단(Food Safety Working Group)의 세 가지 핵심 원칙에 입각하여 중요한 공중보건대책을 마련함.
 - 검사·보류 정책(Test and hold policy) : 위해물질에 대한 식품안전검사국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제품을 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육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노출이 줄어들 것임.
 - 라벨표시(Labeling requirements) : 생육(raw meat) 및 가공류 제품의 영양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
 - 공중보건정보시스템(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 : 포괄적인 자료를 통해 공중보건추세와 식품안전검사국이 규제하는 약 6,300개 시설의 식품안전위반사례 관련 정보를 제공함.
 - 사업 기준(Performance standards) : 가공류 생산업체가 병원균의 발생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함. 새로운 기준을 지난 2년 동안 시행함에 따라 식품안전검사국은 매년 약 5,000건의 캄필로박터(Campylobacter) 및 약 2만 건의 살모넬라 관련 질병을 예방한 것으로 추정함.

자료: USDA(<http://www.fsis.usda.gov>, 2012.09.27)

CIS자유무역협정, 3개국 우선 발효

□ 당초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가 대상

- CIS자유무역권 창설 구상은 소련 붕괴 직후부터 있었음. 1991년 구(舊) 소련 구성 국가 중 발트 3국을 제외한 독립국가연합(CIS)¹⁶⁾이 결성되었으며 1994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즈(Kyrgyz),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11개국이 자유무역권 창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¹⁷⁾
- 2003~2005년에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즈(Kyrgyz)에서 일어난 「색의 혁명」을 계기로 각국의 대(對)러관계가 변화되었음. 투르크메니스탄이 2005년에 준(準)가맹국 선언을 시작으로 CIS정상회의에 모든 국가가 참석하지 않았음. 2008년 8월에 발발한 러시아와 그루지야간의 분쟁을 계기로 그루지야가 2009년 8월 CIS를 탈퇴하면서 공동 보조가 약화되었음.
- 2011년 10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Kyrgyz), 몰도바, 타지키스탄이 CIS자유무역권에 관한 협정의 서명하면서 CIS권내(圈內)의 FTA발족에 희망이 보였음.
- 2012년의 4월에 러시아, 5월에 벨로루시, 8월에 우크라이나가 각각 국내에서 협정의 비준 수속을 완료함. 협정에 근거하여 선행 비준한 3개국만이 9월 20일에 협정이 발효되었음.
 - 아르메니아, 몰도바에서도 9월 의회에서 비준이 승인되었음. CIS집행위원회에 의하면, 아르메니아는 10월 17일에 자유무역권에 가맹할 전망이나 몰도바의 가맹일은 미정임. 또한 카자흐스탄도 9월 26일에 하원 비준이 승인되었음.

□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도 참가

- 9월 28일에 우크라이나 알타(Yalta)에서 개최된 CIS정상회의에서 CIS자유무역권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주최 측인 우크라이나 수상은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2012년 말까지 모든 협정 서명국의 비준이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의 3개국은 지금까지 자유무역권에 관한 협정의 서명을 보류해 왔음.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2년 6월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카리모프 (Karimov) 대통령과 회담한 결과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의 가맹을 후원하는 것에 합의함. 금번 CIS 정상회의에서는 2012년 말까지 우즈베키스탄의 FTA 서명 완료가 승인되었음.

□ 식품 등 일부 예외품목 설정

○ 금번 FTA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협정 가맹국간에는 수출입 시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출입의 수량규제를 하지 않고, 내국민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가별로 일부 예외가 있음.

-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산(産) 정제당에 대하여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러시아가 1톤당 340달러의 수입 관세를 부과함. 국가 및 원산국에 따라, 당류, 사탕무의 종자, 담배, 보드카(vodka), 에탄올이 예외 품목으로 수입 관세가 부과됨.
- 수출 관세, 수량규제, 내국민대우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이 있음. 이는 원산국의 결정은 2009년 11월에 성립된 「CIS에 있어서의 원산국 결정 규칙에 관한 협정」에 근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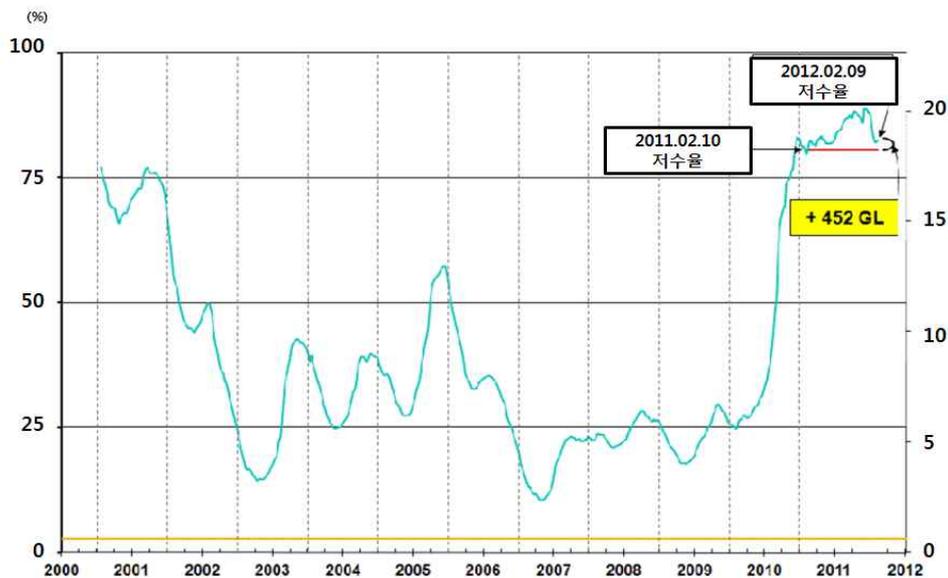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https://www.jetro.go.jp> 2012.10.09)

호주, 수자원과 관개농업

□ 호주의 수자원 현황

- 관개를 위하여 사용된 수량은 73.6억 톤임.¹⁸⁾ 수원(水源)은 하천저류가 29.1억 톤으로 38%, 표류수(漂流水) 20.4억 톤으로 26%, 지하수는 25.2억 톤으로 32%, 기타 2.4억 톤임. 호주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가뭄이었으며 최근 증가 추세에 있음.
- 호주에는 500개가 넘는 대규모 댐이 있으며 총저수(貯水)용량은 838억 톤임. 수천 개의 농장 근처에 소규모 저수지가 있음. 댐은 거의 20세기에 건설되었으며, 대부분이 1950년부터 25년에 걸쳐 완성되었음.
 - 1950년에는 72억 톤의 용량이 25년 후인 1974년에는 665억 톤과 9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1990년에 현재의 수준에 달하였음. 그 후 22년간은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인구당 저수용량은 세계에서 높은 수준임.

그림 1 달링강(Darling River) 유역 댐의 총 저수량



자료: Weekly Australian Climate Water and Agriculture Update ABARES, 2012.

○ 호주에서는 한 번 가뭄이 들면 몇 년 간 계속되며, 대홍수가 발생하면 몇 년은 물이 부족하지 않음. <그림 1>은 달링강(Darling River) 유역 모든 저수지의 경년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12년분을 표시하고 있음.

- 2004년 1월 40% 가까이 저류가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25%까지 내려간 후 회복 경향에 있지만, 당초 저수량에는 미치지 못함. 2002년에 50%를 넘은 저수율은 8년간 한 번밖에 50%를 초과하지 않음. 최근 한 번도 만수(滿水)가 되지 않았음.
- 2010년에는 홍수로 현재까지 이수분(利水分) 저수로서는 100%를 넘어 만수가 계속되고 있음. 즉 2~3년분의 물이 축적되고 있어, 가뭄이 와도 해당년도에는 심각한 영향은 없음.

□ 오주의 관개농업

○ FAO의 자료에 따르면 관개 면적은 255만ha¹⁹⁾이지만, 실제 관개 면적은 2006년도부터 4년간 192만, 185만, 176만, 184만ha로 전환하고, 약 70%에 머물렀음. 이는 30%정도가 관개 시설은 있으나 물이 완전히 없는 상태라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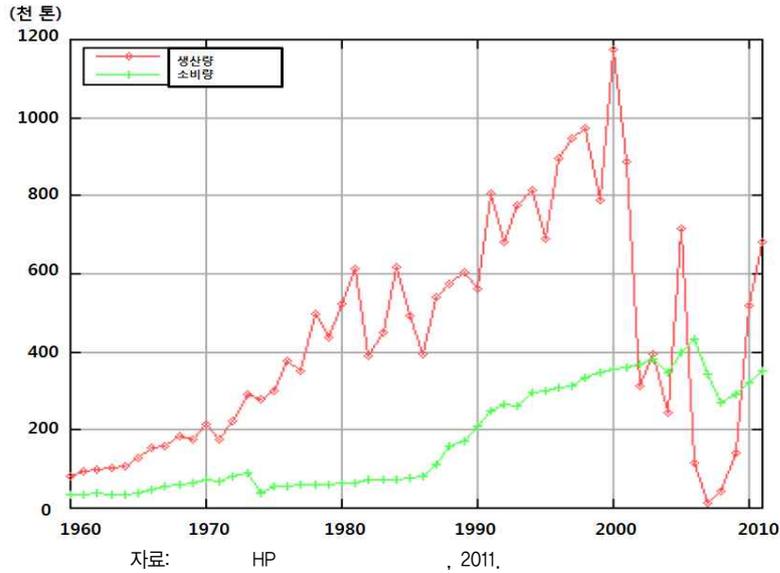
표 1 작물별 관개 상황

| 작물 | 경작면적 천ha | 관개면적 천ha | 관개비율 % |
|------------|-------------|-------------|-----------|
| 쌀 | 51 | 51 | 100.0 |
| 사탕수수 | 533 | 213 | 40.0 |
| 면화 | 304 | 270 | 88.8 |
| 과수, 견과류 | 165 | 122 | 73.9 |
| 식용채소 | 123 | 109 | 88.6 |
| 묘목, 화훼, 버섯 | 16 | 14 | 87.5 |
| 포도 | 163 | 147 | 90.2 |
| 초목 등 | 384,067 | 1,059 | 0.3 |
| 합계 | 445,149 | 2,405 | 0.5 |

자료 : , , 2009.

○ 호주의 쌀 생산량은 2000-2001년에 절정을 이루어 164만 톤을 생산하였음. 가뭄을 겪은 해인 2002-2003년부터 3년간 34만 톤에서 55만 톤으로 약 1/3이하로 감소하였음.

그림 2 호주의 쌀 생산량과 소비량



- 큰 가뭄을 겪은 2007년에는 1만 8,000톤까지 격감하였음. 그 전후 4년 동안 20만 톤 이하이었으며, 2000년의 1/10정도 생산되어 호주는 쌀 순수입국이 되었음. 2010년에는 73만 톤으로 회복하여, 2011-2012년 수확은 92만 톤이 될 전망이다. 가뭄으로 인해 흉작이 든 해와 풍작이 든 해의 수확량 차이는 90배 정도가 되는 해도 있었음.
- 농지면적은 제약 요인이 아니며 물 공급이 결정적인 사안임. 농지에 어떻게 물

표 2 관개 작목의 수생산성()

| 작물 | 경작면적 천ha | 관개면적 천ha | 관개비율 % | 관개수량 ()천톤 | 면적당 천톤/ha | 사용 비율 | 관개생산액 A\$m | ML당 생산액 A\$ |
|------------|-------------|-------------|-----------|---------------|--------------|----------|---------------|----------------|
| 쌀 | 51 | 51 | 100.0 | 618,964 | 12.1 | 6.1 | 102 | 165 |
| 사탕수수 | 533 | 213 | 40.0 | 1,171,933 | 5.5 | 11.6 | 477 | 407 |
| 면화 | 304 | 270 | 88.8 | 1,819,316 | 6.7 | 18.0 | 908 | 499 |
| 과수, 견과류 등 | 165 | 122 | 73.9 | 608,138 | 5.0 | 6.0 | 1777 | 2,922 |
| 식용채소 | 123 | 109 | 88.6 | 419,249 | 3.8 | 4.2 | 1761 | 4,200 |
| 묘목, 화훼, 버섯 | 16 | 14 | 87.5 | 66,267 | 4.7 | 0.7 | 737 | 11,122 |
| 포도 | 163 | 147 | 90.2 | 591,945 | 4.0 | 5.9 | 1314 | 2,220 |
| 초목 등 | 384,067 | 1,059 | 0.3 | 3,672,438 | | 36.4 | | |
| 합계 | 445,149 | 2,405 | 0.5 | 10,084,596 | 4.2 | 100.0 | 9076 | 900 |

자료: , 2009.

을 공급하는지, 즉 관개 가능한 농지면적이 생산량을 결정하게 됨. 호주의 관개 농지에서 생산되는 작목에 대한 단위 수량(水量)당 생산액(수생산성(水生産性))은 다음과 같음.

- 쌀은 사용수량(使用水量) 1,000톤당 생산액은 165호주달러(A\$)로 사탕수수과 함께 최저수준임. 채소 등 원예작목의 1/30이하, 면화의 1/3정도밖에 되지 않음.
- 절수 관개 기술이 높다고는 해도 역시 쌀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하여 물 비용이 상승하면 증산(增産) 인센티브는 낮아짐. 호주의 쌀은 적극적인 증산이나 일정한 생산목표가 있는 품목이 아니므로 남는 물로 다른 작목이 재배되지 않은 지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실정임.

- 물이 귀한 호주에서는 가능한 한 적은 수량(水量)으로 수량(收量) 얻고 싶어 함. 2004년에는 1ha당 12.1만 톤의 물 사용으로 단위수확량이 6.6톤/ha²⁰⁾이었기 때문에 1톤의 쌀에 약1,800톤의 관개용수를 사용한 것임.
- 쌀 생산은 환경약탈형이지 지속가능한 것은 아님. 용수의 부족으로 인한 불안정한 기후조건과 더불어 강우량 500mm이하의 사막 지대에서는 염류(鹽類)집적이 과관개(過灌漑) 등의 우려가 있음. 호주에서는 연작이 금지되어 있음.²¹⁾

□ 호주의 물과 환경문제

- 달링강(Darling River)은 호주 최대의 유역으로 106만km², 호주 국토의 14%임. 유역 인구는 전국의 10% 정도이지만, 농가는 전국 약 40% ,관개 농지는 2/3이 존재함. 농업생산도 약 40%이며 특히 쌀과 과수(오렌지)는 거의 전량이, 밀의 50%는 강 유역에서 생산되고 있음.
- 호주의 저수용량은 838억 톤으로 그 중 달링강(Darling River) 유역전체에서는 226억 톤임. 2012년 1월의 저수량은 184억 톤으로 저수율은 82%로 10년 이내에서 높은 수준임. 유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473mm으로, 수량(水量)으로 보면 5,080억 톤이지만, 잠재 증발량은 2조700억 톤으로 추계되어 강수량을 훨씬 상회하는 건조지대임. 유출량(연평균)은 238.5억 톤으로 연간 물 사용량은 129억 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용률은 전유량(全流量)의 54%에 해당됨.

- 1995년의 각료협의회에 의한 CAP하구(말레이강 하구)에서 자연 상태로 바다에 쏟는 수량(水量)은 149억 톤이라고 추계되는데 유역에서의 관개용수 등의 취수는 20세기 이래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²²⁾
- 1994년에는 107.8억 톤에 달하였고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류영역의 유량저하로 습지대나 어종자원의 감소, 염해나 해조류의 이상발생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하였음.
 - 취수량을 제한하여 환경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1995년 6월, 달링강(Darling River) 강 유역각료협의회에 의해 “CAP”이 도입되었음. CAP은 1993-1994년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취수량의 상한을 마련하는 것임.
- 국가수헌장(水憲章)(National Water Initiative)이 2004년 6월에 채택되었음. 목표는 ‘환경개선에 이바지 하는 동시에 물에 관계되는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 ‘수리권시장 확대’, ‘과잉한 수리권 할당을 해소’ 임.
- 2007년 1월에는 하워드 수상(당시)에 의해 물 확보 국가계획(National Plan for Water Security)이 채택되어 100억 호주달러의 예산으로 관개 설비 투자, 관개 기술 개선, 환경유량 확보 등이 명문화되었음.
 - 또한 달링강(Darling River)강 유역의 물 과잉배분 문제의 대처, 물 관리 재편성, 지속가능한 사용 상한의 설정,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정비 등의 항목이 있음.
- 물 관리는 원래 주(州)정부의 소관이었음. 유역이 4개 주에 걸치는 유역에 대해서도 제휴는 하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수리권(水利權) 부여도 주정부 소관이었음. 국가수헌장으로 명문화 되어있는 보다 적절한 물 관리를 위하여 2007년 및 2008년에 연방수법(連邦水法)이 개정되어, 달링강(Darling River)강 유역청(MDBA)이 발족하였음.
 - MDBA는 유역계획을 책정하는 곳이며 그것에 근거하여 「실시 계획」 책정 및 실시는 각 주정부가 함.
- 2011년 11월에 유역청(流域廳)은 유역계획 초안을 공표하여 공청회(public comment)에 의견을 듣고 있음. 각지에서 효율적인 물 시장 및 자유로운 거래, 환경보호와

생태계의 확보²³⁾, 농업 등을 위한 인프라(infrastructure) 정비²⁴⁾는 계속한다는 내용을 설명회와 공청회를 등을 통해 알리고 있음. 2019년까지 농업용수의 사용량 삭감으로서 27억5,000톤을 제안하고 있음.

- 유역의 지표수 사용을 108억7,300만 톤으로 제한(장기평균, 연간)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12.10.09)



FAO, 2010~2012년 전 세계 인구의 12.5% 만성적인 영양실조

□ FAO, 2012년 식량안보('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12')보고

- FAO가 발간한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12」에서는 2010~2012년 기준으로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인구²⁵⁾는 8억 7천만 명이며 전 세계 인구의 12.5%에 해당한다고 분석함. 이들 중 8억 5천만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임.
- 1990년대에 비하여 2010~2012년 영양결핍 인구는 10억 명(18.6%)에서 8억 6,800만 명(12.5%)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지만 2007~2009년 이후의 영양결핍 인구 감소 속도는 둔화되고 있음.
 - 선진국들의 영양결핍 인구는 2010~12년 기준 1,600만 명 수준이며 선진국 인구의 1.4%에 불과한 반면, 개발도상국의 영양결핍 인구는 8억 5,200만 명으로 개발도상국 인구의 14.9%를 차지하고 있음.
 - 2010~12년이 2007~09년 기간에 비하여 영양결핍 인구 감소 속도가 둔화되고 약 백만 명 가량의 영양결핍 인구가 증가한 이유는 경제 위기와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의 영양결핍 인구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아프리카의 영양결핍 인구는 1990~92년 1억 7500만 명에서 2010~12년 2억 3900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 아시아 지역에서는 서아시아 지역²⁶⁾의 영양결핍 인구가 1990~92년 800만 명(6.6%)에서 2010~12년 2,100백만 명(10.1%)로 증가한 지역임.

25) 만성적인 영양실조는 1990년 이후에 영양결핍이 발생하여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를 의미한다. (FAO, 2012)

26)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지역을 포함한다. (FAO, 2012)

- 아프리카 지역은 2010-12년 기준으로 북아프리카 지역²⁷⁾은 영양결핍 인구가 400만 명으로 해당 지역 인구 중 영양결핍 인구가 2.7% 수준으로 매우 낮으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²⁸⁾의 영양결핍 인구는 2억 3400만 명으로 인구의 26.8%를 차지함.

표 1 개발도상국의 영양결핍 실태 변화

단위: 백만 명, %

| 구분 | 1990-92 | 1999-2001 | 2004-06 | 2007-09 | 2010-12* |
|-------|---------|-----------|---------|---------|----------|
| 세계 | 1,000 | 919 | 898 | 867 | 868 |
| | 18.6% | 15.0% | 13.8% | 12.9% | 12.5% |
| 선진국 | 20 | 18 | 13 | 15 | 16 |
| | 1.9% | 1.6% | 1.2% | 1.3% | 1.4% |
| 개발도상국 | 980 | 901 | 885 | 852 | 852 |
| | 23.2% | 18.3% | 16.8% | 15.5% | 14.9% |
| 아프리카 | 175 | 205 | 210 | 220 | 239 |
| | 27.3% | 25.3% | 23.1% | 22.6% | 22.9% |
| 아시아 | 739 | 634 | 620 | 581 | 563 |
| | 23.7% | 17.7% | 16.3% | 14.8% | 13.9% |
| 중남미 | 65 | 60 | 54 | 50 | 49 |
| | 14.6% | 11.6% | 9.7% | 8.7% | 8.3% |
| 오세아니아 | 1 | 1 | 1 | 1 | 1 |
| | 13.6% | 15.5% | 13.7% | 11.9% | 12.1% |

주 : 2010~2012년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 FAO,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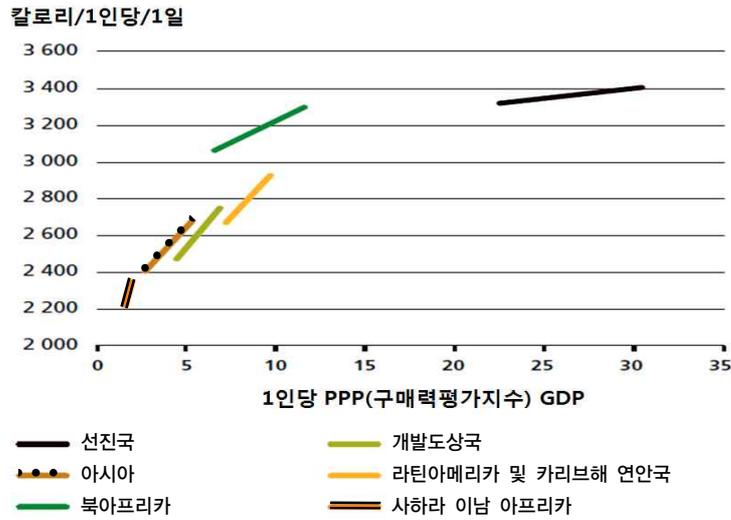
□ 소득의 증가, 식품소비의 변화를 가져와

-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세계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씩 성장하였음. 또한 동기간 동안 세계 1인당 1일 영양공급량도 210kcal(8%) 증가하였음.
 - 개발도상국의 영양공급량 증가율은 275kcal(1인당, 1일)로 선진국의 86kcal 보다 높았음. 개도국 지역에서는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이 1인당 1일 영양공급량이 260~270kcal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사하라 이남 지역은 130kcal 수준에 불과하였음. 사하라 이남 지역은 경제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임. 추가적인 소득은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영양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소득 증가에 따른 식품소비 수요 증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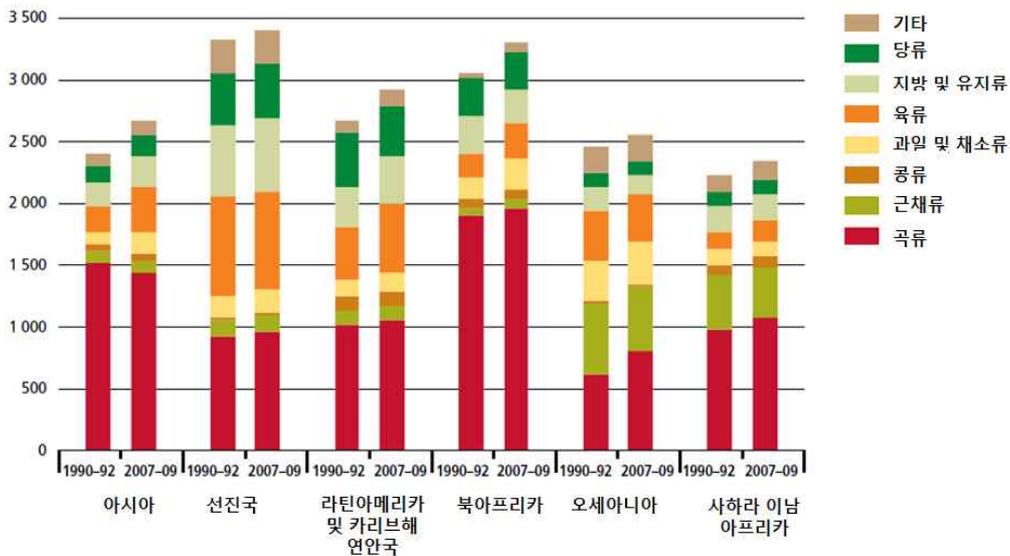


자료 : FAO, 2012.

○ 소득증가는 영양공급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식품소비 패턴도 변화시켰음.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곡물과 서류 소비량이 줄어든 반면 과일류, 채

그림 2 지역별 소득증대에 따른 영양공급량 및 공급원의 변화

총영양공급량당 비율(k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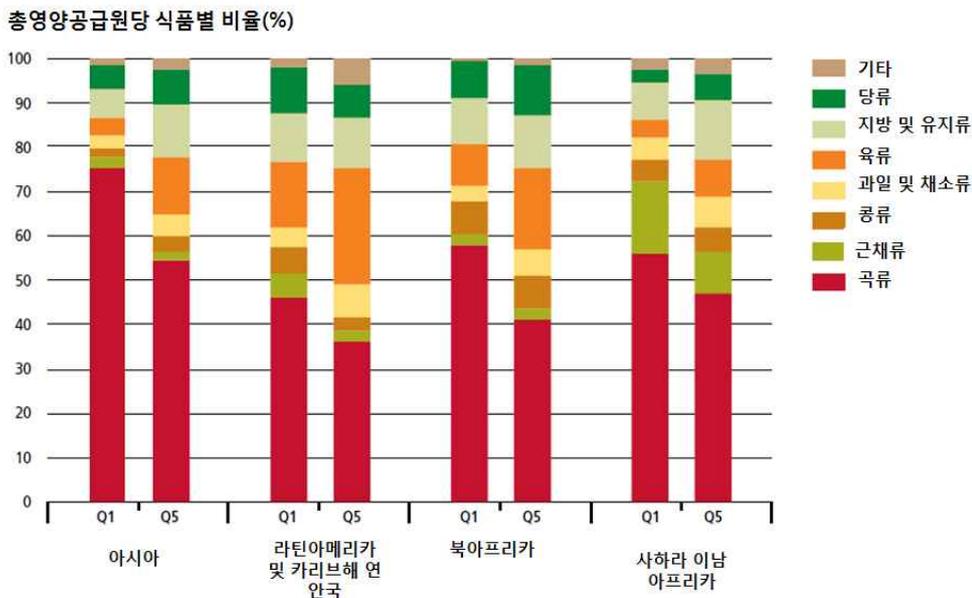
자료 : FAO, 2012.

소류, 축산물, 어류 소비량이 증가하였음.

- 아시아에서는 곡물과 서류의 소비량이 줄고 과일류, 채소류, 축산물의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과일류, 채소류, 축산물의 소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곡물과 서류의 소비가 증가하였음.

- 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소득증대에 따른 영양공급원 비율의 변화 패턴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각 지역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분류하여 영양공급원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지역과 관계없이 소득이 높은 그룹이 소득이 낮은 그룹에 비하여 곡물과 서류가 영양공급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축산물과 과일, 채소류가 영양공급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경제성장을 통하여 영양결핍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영양결핍 인구가 경제성장에 참여하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그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영양결핍 인구는 식품 소비량을 증대시키고 소비하는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추가적인 소득을 사용하여야 함. 또한 건강과 위생 교육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야 함. 특히 가정의 소비를 주로 담당하는 여성들의 교육

그림 3 소득수준에 따른 영양공급원 비율의 차이



주 : Q1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그룹이고 Q5는 해당 지역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임.
 자료 : FAO, 2012.

참여는 이러한 소비 패턴을 잘 이해하기 위해 중요함.

- 정부의 영양결핍 인구에 대한 추가적인 공공자원 지원도 필요함. 정부의 지원은 식량안보 망 구축, 건강, 교육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과 같이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분야에도 필요함.
- 2007년까지 경제성장은 영양결핍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그러나 지난 10년간 개도국들의 높은 경제성장을 하였으나 많은 국가들에서 경제 성장만큼 영양결핍 인구를 감소시키지는 못하였음. 따라서 경제성장만으로는 영양결핍 인구를 대폭 감소시키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식량안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차가 존재함.
- 저소득층과 저소득국가에서 농업의 성장은 기아와 영양실조를 감소시키는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함. 왜냐하면 저소득층과 저소득국가에서 영양결핍을 겪고 있는 인구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임. 따라서 농업성장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소득 증대로 연결됨.
 - 특히 이들의 대부분은 소규모 영농형태이며 이들의 성장은 영양결핍 인구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이며 기타 재화와 서비스에 소득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부는 농업-영양-건강으로 연결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함. 또한 정부는 경제성장을 통하여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국민들이 다시 경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야함.
 - 특히 아이들의 영양문제와 교육을 향상시켜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해야 함.
- 경제성장만을 통하여 저소득 국가의 저소득층이 영양결핍을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림. 영양결핍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구는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함.

자료: UN식량농업기구 FAO(<http://www.fao.org> 2012.10.09)

EU, 일본산 식품규제 대폭 완화

□ 방사성 검사 분석 보고서가 필요한 품목 삭감

- 식품연쇄·동물위생상설위원회(SCoFCAH)²⁹⁾는 19일, 가맹국의 투표로 9월부터 재검토를 계속하고 있었던 일본 수입 식품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유럽집행위원회의 정식채택을 기다리고 있으며 관보에 게재 후 3일후에 발효될 예정임. 단, 현행의 유럽집행위원회 실시 규칙 284/2012(PDF)이 10월말부터 실효(失効)되기 때문에 11월 1일에 발효되어, 2014년 3월 31일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 유럽집행위원회의 보건·소비자보호총국(SANCO)에 의하면, 유럽집행위원회 채택은 10월 26일, 관보게재일은 27일을 예정하고 있다고 함.
- 금번 회의에서 대상 12개 도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에 첨부 의무화 한 방사선검사 분석 보고서를 후쿠시마현(福島縣) 이외의 11개 도현에 대해서는 대상품목을 한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 후쿠시마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알코올 음료이외의 모든 품목의 방사선검사 분석 보고서 첨부이 필요하지만, 군마(群馬), 이바라기(茨城), 도치기(栃木), 미야기(宮城),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가나가와(神奈川), 이와테(岩手) 등 8개현 및 도쿄도(東京都)에 대해서는 차, 버섯류, 어패류, 쌀, 대두, 팥, 일부 나물과 채소, 과일로 대상품목을 한정함.
 - 야마나시현(山梨縣)은 버섯류, 시즈오카현(静岡縣)은 차, 버섯류에 한하여 방사선검사 분석 보고서가 필요함.
- SCoFCAH는 원전사고후의 제2수확기 4만 건 이상의 모니터링 검사 결과를 기초로 방사선검사 분석 보고서의 첨부이 필요한 대상품목을 한정하는 것을 결정하였음.
- 현행 규칙에서는 일본 술, 소주, 위스키만이 수입 규제의 대상외가 되고 있지만, 기타 알코올음료도 포함하여 모든 주류, 후쿠시마현도 포함하여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수입 규제의 대상 밖으로 함.

-
- 그 이유로는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의 방사선이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연마(研磨) 및 발효 공정에 의해 방사선이 대폭으로 줄어들었으며, 일본 당국, 수입국 당국의 수속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 등을 들었음.

□ 임의검사 수출률 일률 5%로 저감

- 현행 규칙에서는 대상 12개 도현에서 산출된 모든 식품 및 사료에 대하여 EU에서의 통관 시 화물의 적어도 5%, 또는 대상 12개 도현에서 발송된 모든 식품 및 사료에 대해서는 적어도 10%가 임의검사의 대상이 되었음.
 - 이것은 하한을 설정하였기 때문으로 가맹국에 따라서는 이들 이상의 비율로 임의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였음.
- 최근 1년 동안 통관 시 임의검사에서 문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통관 시 임의검사의 추출률을 낮추는 것에 합의하였고, 모든 가맹국·모든 품목에서 일률적으로 5%로 규정하였음.
- 11월 1일 이후부터 수출 증명서는 신(新)규칙의 부속서 1이 유효함. 단, 신규칙의 발효일 이전에 일본을 출발한 식품 또는 수출 증명서의 발행일이 11월 1일 전의 것으로, 12월 1일 전에 일본을 출발한 식품에 대해서는 현행 규칙(유럽위원회실시규칙284/2012)의 수출 증명서도 유효함.
- 향후 재검토에 대하여 원전사고 후 제2수확기의 모니터링 검사 결과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쌀, 대두 등에 대해서는 2013년 3월에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임. 가맹국은 3개월마다 모든 분석 결과를 식품 및 사료에 관한 긴급경고시스템(RASFF)³⁰⁾을 통하여 유럽집행위원회에 보고 해야 함.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https://www.jetro.go.jp> 2012.10.23)

일본, 비료가격 2기 연속 가격 인하

□ 일본 엔고 및 원료가격 하락으로 비료가격 2기 연속 인하

- JA전농은 30일, 11월부터 2013년 5월 봄 비료의 주요품목가격을 발표하였음. 복합 비료의 기준상표인 고도화성(高度化成)은 현(顯) 도선 기준 공급 가격을 10월 까지의 가을 비료대비 0.7% 인하되어 2기 연속 가격이 인하 됨.
 - 기타 품목도 대부분 엔고와 함께 비료 원료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을 반영하였음.
- 고도화성(高度化成)은 6~10월의 가을 비료가격도 전기 대비 0.3% 인하됨. 2기 연속의 인하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0% 가격 인하되었음.
- 복합 비료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등 제조 경비의 상승분을 흡수하도록 업체에 요구하였고, 주원료의 가격하락을 반영하여 가격을 인하하였음. 단, 유기화성(有機化成)은 기준 상표 가격은 변함없지만 유채의 씨 찌꺼기 등 유기원료의 가격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일부 상표는 가격을 인상하였음.
 - 수입 요소는 가을 비료와 비교하여 2.4% 내렸음. 인도의 매입 중지와 중국이 여름철에 수출 관세를 내린 것 등으로 국제시황이 여름에 하락하였고 엔고도 반영된 것임. 국산요소는 업체로부터 가격 인상 요청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과인산석회(過磷酸石灰)는 1.1% 내렸음. 원료인 인광석 가격이 떨어진 것을 반영한 것임. 염화칼리는 엔고나 해상운임의 하락 등으로 2.5% 내렸음.
- JA전농은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비료수요는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비료 원료가격은 앞으로도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시비(施肥) 비용 삭감을 위하여 토양 진단에 맞춘 저성분비료(低成分肥料)나 노동력 절약형 시비(省力型施肥)의 보급 및 물류합리화 등의 대책을 강구함.

자료 : 日本農業新聞(2012.10.20)



제50회 호주-일본 경제합동위원회

□ 참가자 300명 초과

- 호주와 일본은 1957년 7월에 호-일 통상협정을 체결하였음. 1950년대는 호주 각지에서 풍부한 자원매장량이 확인되고 1960년대에 철광석 및 석탄 등 광물자원의 대일(對日)수출 금지가 해제 되면서 양국 간 무역 거래가 활발해짐.
 - 1962년 8월, 호주에 호일(豪日)경제위원회가, 1963년 2월에는 일본에 일호(日豪)경제위원회가 설립되었음. 제1회 일호경제합동위원회는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되었으며 무역을 중심으로 한 상호보완적인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옴.

□ 양우 20년, 10억 호주달러의 사회기반시설 정비

- 금번 합동위원회의 주제는 ‘변화되는 아시아의 인구구상’과 ‘혁신적인 미래 발전’이었음.
 - 호주의 NSW주(州)는 높은 경제성장과 고용 확보 면에 해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 환경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음. 향후 20년을 내다본 사회기반시설 정비 계획을 책정하여 10억 호주달러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대외적으로는 ‘아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역내국과의 관계 강화의 일환으로 일본에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임.
- 연방정부가 발표 예정 중인 백서 「아시아 세기에 있어서의 호주」의 편집 책임자인 호주의 전(前)재무차관은 ‘직면하는 글로벌과 국가적인 과제-번영과 지속가능한 장래의 구축’에 대한 기조 강연을 함.
 - 아시아는 성장의 속도가 빠르며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모두 관여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 호주는 아시아와 효과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강연 후 토론 중 호주의 전(前)재무차관은 에너지나 식량안전보장 등 호주와 중국 양국 간에서 상호보완성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EPA에 대해서는 다국 간 협정이 바람직하며 두 국가 간에 잘못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차후에 지속적으로 관계가 좋아지는 협정이 되어야 함.

- 일본-호주 EPA에 대하여 주일 호주 대사는 지적재산 등 고도의 내용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졸속한 대응이 아닌 일본과 호주 쌍방에 유익하여야한다고 지적함. 또한 호주주재 일본 대사는 널리 많은 사람에게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으며, 조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정치적인 판단도 요구된다고 언급함.

□ 일본-호주 쌍방의 강점을 살린 시장 개발이 효과적

- 매킨지 재팬의 파트너는 기초강연에서 아시아의 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일본-호주 간 아시아에 있어서의 협력 사업의 아이디어로서 (1) 경제기반구축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PPP(관민 파트너십³¹⁾)로 실시, (2) 물량뿐만 아니라 안전성 및 질을 유지한 식품 공급, (3) 일본의 기술을 활용한 통신 및 농업 개혁, (4) 대학간 상호인증제도 도입 등을 제안함.
- 패널 토론에서는 인구 증가에 의한 도시화의 가속화, 고령화에게 대응한 마을 만들기, 인구구성의 변화가 먹거리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호주의 풍부한 자원과 일본의 기술개발과 같은 쌍방의 강점을 살린 시장개발이 효과적이라는 것 등이 소개되었음.
- 동태적 인구 변화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정부는 출생률 감소·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를 일대 개혁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일호협력과 국제금융기관의 펀드나 보증 제도의 활용도 효과적이라고 언급함.

□ 젊은 세대가 참가하는 제3국에 대한 협력 검토

- ‘혁신적인 미래 발전’에서는 이후 몇 십년간에 걸쳐 물 공급, 식량생산 및 에너지 창출이 중대한 공생 과제로서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는 고효율 석탄 화력발전과 친환경 도시 등이 소개되었음.
- 리오턴토 철광부문의 최고책임자는 혁신적인 조직 운영으로서 사용되는 언어는 전달 수단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분야를 학습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 학교법인 리쓰메이칸(立命館)의 부총장은 미래의 젊은 세대도 참가를 독려하며

일본-호주의 강점을 살려, 향후 50년 제3국 협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오주 총리, 오주-일본 EPA 체결에 기대 표명

- 전체 회의에서는 불확실한 시대에 대한 대응 및 향후 전진을 위하여 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함.
- 양국이 하는 공동 사업의 확인이 적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에딩턴 회장은 제3국에서의 사회기반시설 협력 이외에 헬스케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사회기반시설 소위원회 위원장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부이사장은 두 국가 간 관계는 보완 관계에서 협동(協動) 관계로 바뀌어 도전하는 시대로 들어갔으며 제3국에 대한 협력이 다음 50년의 주제라고 지적함.
- 일본대사는 일본총리의 친서를 대독하였음. 친서에는 일본-호주 EPA교섭의 조기 타결을 위하여 일본-호주 쌍방이 협력하여야 하며, 동아시아의 지역 포괄적 경제 제휴(RCEP)교섭 초기에 협력하고, 환태평양 파트너십(TPP)교섭 참가를 위한 협의에도 호주와 긴밀히 서로 연락을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호주총리는 아시아의 세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일본-호주 간 FTA를 체결해야 하며 양국 간 투자가 증가하고, 자원과 농업 무역도 활발하여 FTA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언급함. 식량안정보장으로 연결되고, TPP에 가맹할 준비도 되었다고 언급하며 체결에 장애가 되는 것을 낮추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두 함께 행동할 것을 언급함.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https://www.jetro.go.jp> 2012.10.18)

자료작성 : 이혜은 연구원, 최양규 인턴 연구원